

부대공사인허가등 신속처리 결과 통보서

신청인		
신청일		
신청사항		
인가·허가 등 관할 행정기관의 신속처리 의견	관할 행정기관명	
	신속처리 요청사항	
	신속처리 결과	
	신속처리 요지	

「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」 제17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해당 인가·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직인